

3. 住宅建設工事 監理費 支給基準中 改正

建設交通部告示 第1996-38號 1996. 2. 6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리대가등) ①감리대가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감리자의 감리업무에 대한 감리비용 (이하 “감리대가”라 한다)은 총공사비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해당인·월수에 기준금액과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총공사비(월)	감리인·월	총공사비(월)	감리인·월
20억이하	10.03	300억	133.32
30억	14.50	500억	217.76
50억	23.73	1,000억	428.43
100억	46.21	2,000억	844.44
200억	89.59	3,000억이상	1,247.24

*주)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 보간으로 한다.

※감리대가 산출 방법

감리대가 = 총공사비에 따른 공사감리인·월수 × 기준금액 × 승수(1.0424 × 2.

63)

- 기준금액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중급감리원 1인 직접 인건비 × 25일

- 승수(1.0424) : 중급감리원의 직접 인건비 기준에 따른 환산비 평균치 (2.63) : 직접 인건비에 대한 1.1배의 간접비와 직접 인건비 및 간접비의 0.25배의 보상비를 적용한 수치

2. 감리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감리대가 = 건축비 상한가격 × 0.023 × 연면적(단위 : 3.3m²/평)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분양가원가 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하고, 연면적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등 단지내 모든 건축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감리자는 감리원별 현장 상주기간에 별표의 감리원등급별 환산비를 곱하여

산출한 인·월수의 합계를 제1항 제1호의 총공사비에 의한 감리인·월수이상 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별 현장상주기간은 당해 공종의 공사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사비의 산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사업비에서 대지구입비, 부가가치세액등을 제외한 공사원가금액(당해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으로 하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감리원등급별 임금 및 환산비

등 급	임금/환산비
특급감리원	132,791/1.579
고급감리원	102,714/1.221
중급감리원	84,115/1.000
초급감리원	63,855/0.759
보조감리원	54,923/0.653

부 칙

이 기준은 1996년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자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